

#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b>2010. 6. 25(금) 배포시</b>		
배포일시	2010. 6. 25(금) 14:00	담당부서	예산실 민간투자정책과 예산실 민자사업관리팀
담당팀장	한 훈(2150-7410) 이형철(2150-7430)	담당자	고상진 사무관(2150-7413) 정옥균 사무관(2150-7433)

## 제목 : 서울제물포터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민자사업 추진

□ 기획재정부는 6.25(금) 이용걸 제2차관의 주재로 2010년 제3회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제물포터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등 2건의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구성 : 총 18명(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각부처 차관 9명, 민간위원 8명)

○ 서울제물포터널 사업\*은 서남부의 주요 간선도로축인 제물포길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연계하여 서울과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추정사업비 5,231억원(보상비 223억원 별도), 연장 9.72km, 왕복 4차로

- 제물포터널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며, 제3차 제안공고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면 '11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16년 개통 예정임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 사업\*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추정사업비 3,530억원, 학위과정동 : 332,983㎡, 연구동 : 145,104㎡

\*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 유가면 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주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되며, '10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14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임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 수익하는 방식

□ 아울러, 현재 개조식·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체계를 정비하고 조문화하는 동시에,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민자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BTL 복합화사업 추진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금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전부개정으로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을 보다 알기 쉽게 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BTL 복합화 사업의 내실화 효과를 기대함

<별첨 1> '10년 3회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의결사업 개요

<별첨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1**

**‘10년 3회 민투심 의결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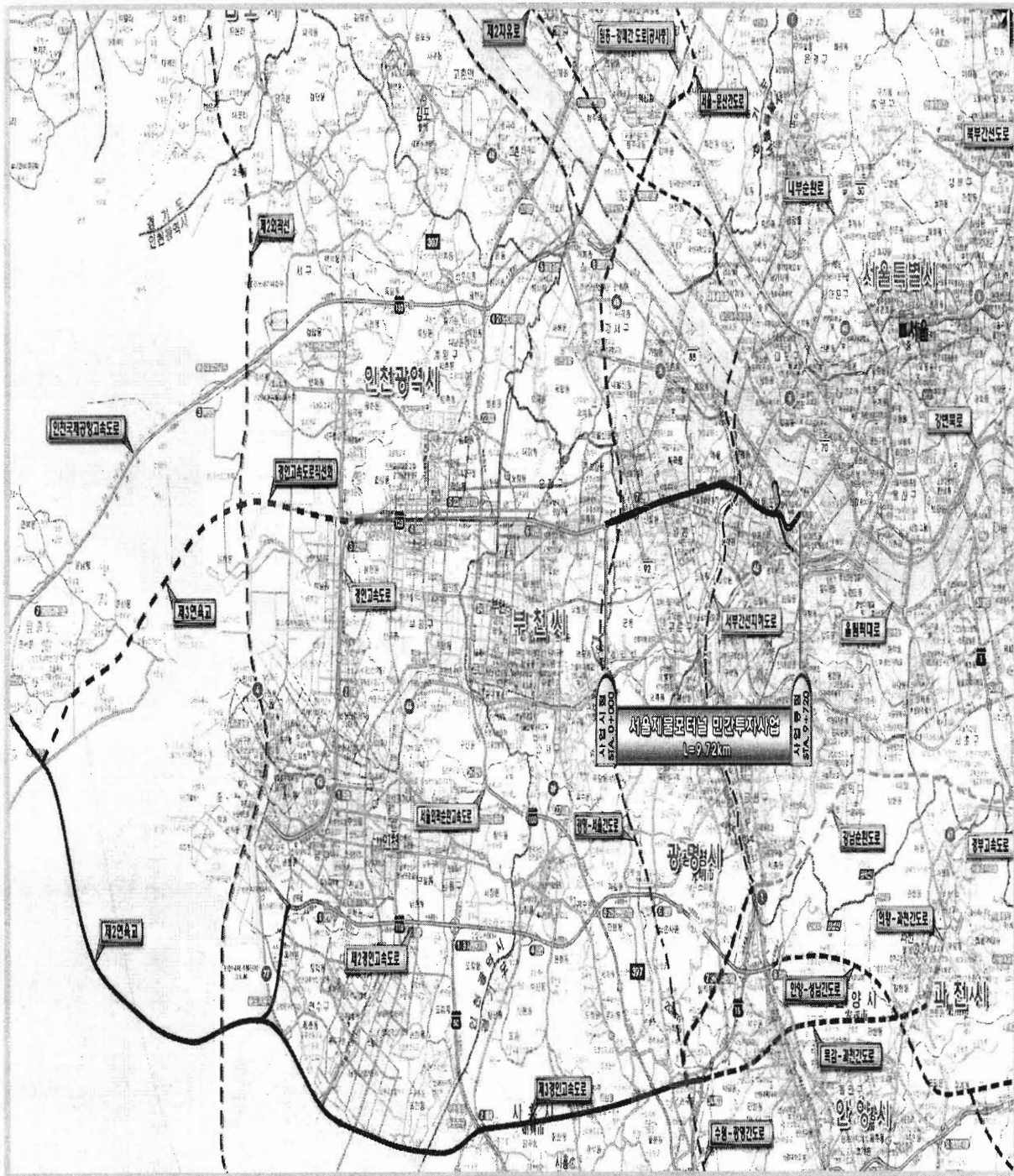
사 업 명	총사업비* (추정)	사업내용	주무관청 (문의처)
-------	---------------	------	---------------

**< 신규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고시·공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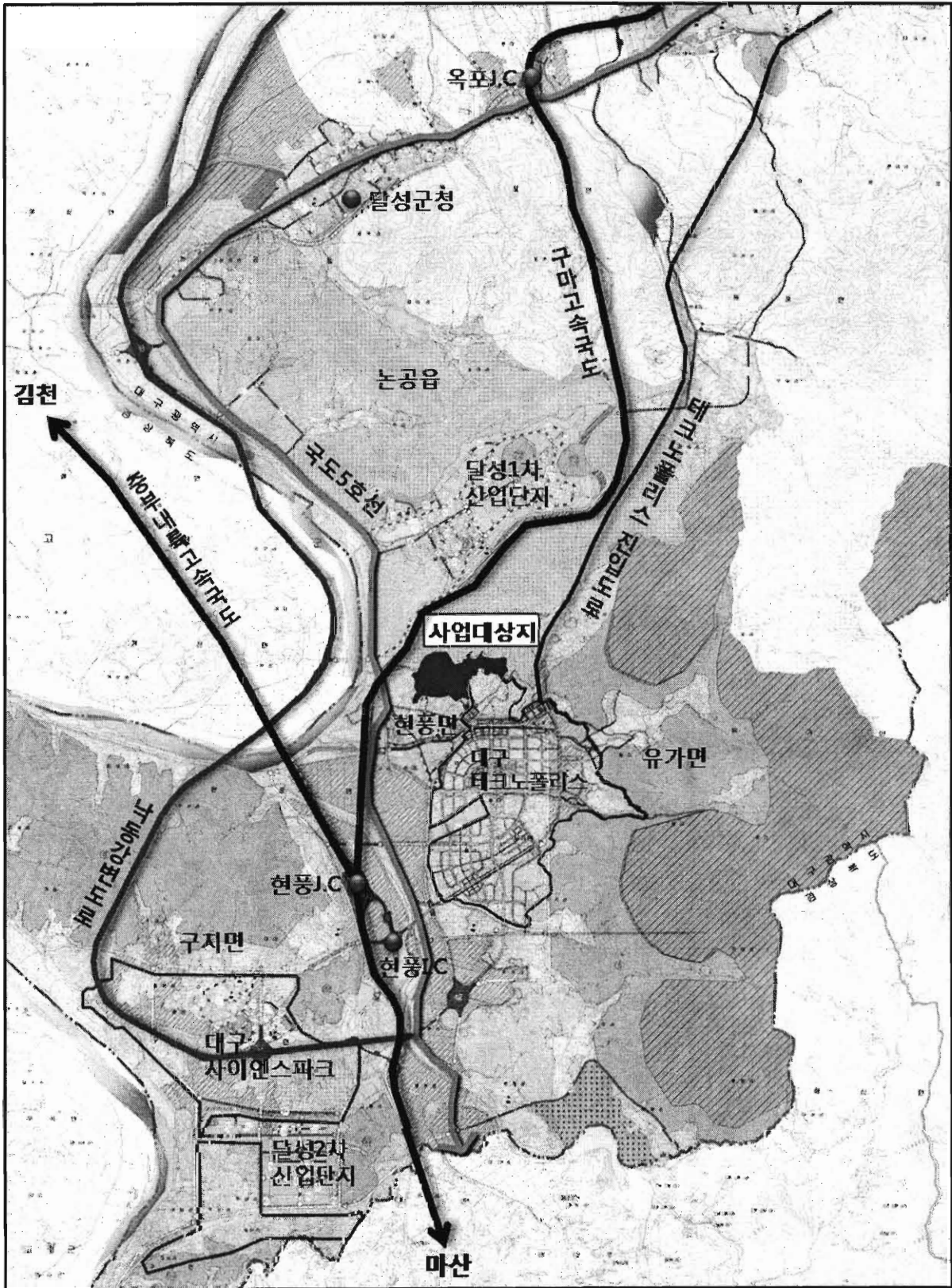
서울제물포터널 (BTO)	5,231억원	연장 9.72 km 왕복 4차로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실 (3707-876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BTL)	3,530억원	학위과정동 : 332,983m <sup>2</sup> , 연구동 : 145,104m <sup>2</sup>	교과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추진단 (2100-8703)

\* 토지보상비는 제외

# 【참고 1】 서울제물포터널(BTO) 위치도



【참고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BTL) 위치도



**① 기본계획 체계화 및 조문화**

□ **개정배경**

- 민투법령, 기타 관계법령을 기본계획에 단순 중복기술하거나, 기본계획 내에서도 유사내용을 중복하여 규정
- 개조식·나열식으로 규정되어 관련 규정 인용의 곤란 등 주무관청·시행자가 사업추진시 활용하기에 부적합

□ **개정방향**

- ① **(민간투자정책방향)** '10년도 민간투자 중점정책 방향과 분야별 추진방향, 주요 투자계획 등을 민투심에서 기의결('10.1.29)
- ② **(일반지침)** 기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임대형 민자사업시행 지침 중 민간투자제도의 일반적인 사업지침을 정비·조문화
- ③ **(사업추진절차)** 기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 중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Guideline(사업추진 절차 등)을 정비·조문화

**<지침정비 기준>**

- 법령 규정사항의 **단순 중복 기술 및 해설을 삭제**하고, BTO·BTL **공동적용 사항과 개별 적용사항을 정비**
  - \* 법령중복규정, 해설사항 등의 삭제로 인한 이용자 편의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해설서'(PIMAC)를 향후 별도 마련
- **단순 오류사항,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히 함
  - \* 완공시기 → 준공예정일, 운영수입보장 → 투자위험분담제도 등

## ② 민자사업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개선

### □ 민자사업 관리체계 강화

- 현재 주무관청이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 사업추진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주요 민자사업추진단계별\*로 현황을 제출하도록 변경하여 민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 사업고시, 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 운영개시, 재무모델변경, 운영단계 등

- 단위사업별로 민자사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여 보여 주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 관리 유도

### □ 임대형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등에 대한 검토기관 확대

- 현재 모든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등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  
- 순수 지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허용

\* 1천억원 이상 사업 및 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은 제외

### □ 복합화 사업 추진체계 개선

- 2개이상의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복합화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를 신설·강화하여 복합화사업 추진 지원

#### ※ 주요 추진절차

- 복합화시설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1월) → 복합시설추진협의회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2월) → 복합화 대상 예정사업 선정(3월) → 민자적격성 조사 실시(4월) 및 한도액 요구(6월말)
- 복합화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 등)을 지정·운영하고 복합화사업 관계기관간 협정서(안) 작성(PIMAC) 지원